

「구미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으로 정정된 ‘지자체 출자출연기관’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자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 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을 구미시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

또는 출연기관으로 명시

○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5조)

·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역할 및 수행사항 명시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• 2024년도 3월 5일자로 개정된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 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의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•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개정 이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• 다만,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안 제5조 “다만,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 한다.” 에서 언급한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